

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청빙위원(이하 '위원'이라 함)들의 자유 의지와 민주적 방식으로 담임목사 청빙 활동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권한)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당회의 최종 인준을 통하여 공적 효력을 갖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시무장로 3명, 장로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 서리집사 2명(남/여), 청년마을 2명(남/여)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2. 시무장로 3명, 장로회 1명, 서리집사 2명은 당회에서 직접 임명하고, 권사, 안수집사, 청년마을의 대표는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담임목사 청빙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업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총무는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 및 위원 소집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4.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며 위원들의 열람 요구 시 응하고 대외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권한과 책임)

1.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할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모든 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고 결정과 결의에 관한 투표 권한도 동일하다.
3. 모든 위원들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유지해야 한다.
4. 당회원 및 모든 위원들은 담임목사 후보자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5. 3항과 4)항을 위반한 위원은 위법 즉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회의)

1. 정기회의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개최하며 전체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 수 있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 및 보고)

1. 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 청빙하고자 하는 담임목사의 구체적 자격 요건
 - 청빙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 방법
 - 청빙후보자의 결정 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회에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 내용은 필요시 위원회 또는 당회의 협의를 통하여 총무가 제한적으로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교회가 지원한다.

제12조(기타)

1. 본 교회 현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친인척(범위는 민법상에 준함)은 청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위원들에게 청빙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촉을 한 후보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3.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청빙위원회 운영세칙' 및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